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내규

2017. 10. 11 개정

2017. 12. 28 개정

2019. 3. 19 개정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에서는 '대학원'이라 한다) 장학생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종류) ①장학금은 대학원장학금과 외부장학금으로 구별되며, 기탁기금장학금은 대학원장학금으로 본다.

②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은 이화사랑장학금, 이화믿음장학금, 이화소망장학금으로 구별된다.

③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은 이화최우수장학금, 이화차우수장학금, 이화우수장학금으로 구별된다.

제3조 (사회취약계층 장학금) ①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3년간 학칙에 따라 사회취약계층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재산 상황 등에 의해 해당 학생의 경제적 사정이 장학금 지급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기혼학생의 경우 소득분위 산정결과와 부모의 소득,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기혼학생의 소득분위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할 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 여부와 장학금액을 결정한다. 단, 2017. 8. 16 이전 지급한 장학금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에 따른다.

제4조 (장학위원회) ①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에 장학위원회를 둔다.

②장학위원회는 대학원장,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기획평가부장과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③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장학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의 금액 및 장학생 수의 결정
2.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심사 및 추천
3. 기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⑥장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급대상) ①장학금은 대학원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학생 중 장학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에게 지급한다.

②학사경고를 받은 자와 유급된 자는 다음 등록학기의 장학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신청 공고)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필요한 장학금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신청 방법과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 방법) 장학생 선발 시 소득분위가 고려되는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장학재단에 소득분위 산정신청을 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의 소정양식)
2. 기타 장학생 선발 심사를 위하여 장학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8조 (등록금 초과지급 금지)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등록금 범위 이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 (장학금 지급의 취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학원장은 장학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장학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장학금을 축소 지급할 수 있다.

1.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혜할 경우
2. 제3조의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과도한 지원 등의 음성소득을 수혜하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3. 제7조에서 요구하는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장학금 지급대상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장학금의 환수) ①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휴학 또는 자퇴를 한 때에는 지급받은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지 않는다.

1. 입학금이 포함된 장학금 수혜 후 휴학한 경우, 입학금에 해당하는 금액
2. 본인이 사망한 경우
3. 기타 장학위원회의 심의 결과 환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부 칙(2009. 2. 23. 제정)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23 개정)

제1조 (시행) 이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